

파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200
----------	-----

제출년월일 : '96.10.16

제 출 자 : 파주시장

☐제안이유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예방위주의 재해대책추진을 위하여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1995. 12. 6, 법률 제4993호)함에따라 동법시행령 제11조규정에 의거 파주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자연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주요골자

가. 파주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 (안 제 2 조)

- 통제관 : 건설도시국장
- 담당관 : 건 설 과 장
- 실무반 : 시관련공무원과 방재관련기관(경찰서,교육청,향토사단등)

나. 파주시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안 제 3 조)

- 방재관련기관에 속한 5급이상공무원으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부장이 위촉

다. 파주시재해대책본부회의의 협의사항 ----- (안 제 4 조)

-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 기타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사항

라. 재해기간중 파견근무 ----- (안 제 5 조)

- 본부장은 기간을 정하여 재해관련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조례(안) : 불 임

☐관계법령발체 : 불 임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파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재해대책본부(이하“본부“라한다)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본부의 운영) ①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한다.

②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건설도시국장과 건설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시관련공무원과 제5조의 규정에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 등으로한다.

제3조(파주시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 파주시재해대책본부회의(이하 “본부회의”라한다)는 다음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5급이상 공무원(군부대의 경우 소령급장교를,경찰공무원의경우는 경감급 이상 경찰공무원을 말한다)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부장이 위촉하는자로 구성한다.

1. 파 주 시
2. 파주경찰서
3. 향토사단
4. 파주교육청
5. 금촌우체국

6. 한국통신공사금촌전화국
7. 한국전력 파주지점
8. 기타 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4조(본부회의 협의사항) 본부회의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파주시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재해기간 파견근무) 본부장은 재해기간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재해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 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이조례에서 규정된 것외에 본부의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본부장이 따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관계법령 발췌

□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지방재해대책본부의 조직등) ① 시·도 재해대책본부 및 시·군·구 재해대책본부(이하 “지방재해대책본부” 라한다)에 각각 본부장 1인 및 차장 1인과 본부원 약간인을 둔다.

②시·도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도본부장” 이라 한다)은 시·도지사가되고, 차장(이하 “시·도차장” 이라 한다)은 부시장·부지사(부시장· 부지사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부시장·부지사를 말한다)가 된다.

③시·군·구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군·구본부장” 이라 한다)은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이되고, 차장(이하 “시·군·구차장“ 이라 한다)은 부시장 · 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④지방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등에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8조 제3항내지 제5항 및 제9조의 규정은 지방재해대책본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본부장”또는“중앙본부장”은 “시·도본부장” 또는“시·군·구본부장”으로“차장”은“시·도차장”또는“시·군구차장”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지방재해대책본부”로,“대통령령”은“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본다.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지방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제10조 (제2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구성한다.

② 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시·도 재해대책본부의 차장은 특별시의 경우 행정(2)부시장,광역시 및 도는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 지방재해대책본부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관할구역안의 재해응급대책의 총괄 조정 및 집행
2.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의 집행에관한 사항
3.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4. 제1호내지 제3호외에 관할 구역안의 재해예방·응급대책·재해복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지방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협의사항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이영에 규정된 것외에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정한다.